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5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13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이양수

유성엽 · 윤영일 · 정인화

이동섭 · 백재현 · 강창일

김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을 비롯해, 장외발매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 및 부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.

위의 공간은 농축산물의 직거래 등 농축산물의 판매 · 유통 등 농업인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농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「한국마사회법」에 이러한 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 · 유통 및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(안 제49조의3 신설).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유휴공간 등의 활용) ①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등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을 농축산물의 상설 판매·유통 및 농업인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유효공간 및 유휴시설의 조성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49조의3(유휴 공간 등의 활용)</p> <p>①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등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을 농축산물의 상설 판매·유통 및 농업인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유효공간 및 유휴시설의 조성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p>